

'23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운영위원회(1차) 개최 결과

1 일시 및 장소

- (일 시)'23. 4. 14.(금) 14:00 ~ 16:30
- (장 소)공단 서울광역본부 대회의실(9층)

2 심의 · 의결사항

- 주요 심의 사항 및 결과

구분	검토내용	결과	위원회 검토사항 요약										
안전 1	'23년 평가 계획 및 방법	원안 동의	① '23년 평가 계획 및 방법' ⇨ 원안동의 - 업무 실적 없는 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(원안)평가는 제외하고 “평가제외(실적없음)”으로 공표										
안전 2	평가 기준 세부 항목 검토	수정 동의	① 공통 항목(회람 기준) ⇨ 원안동의 1. 업무규정, 연간 사업계획 및 업무분장 등의 문서에 대해 기관 등록 인력의 회람 여부 평가(감점): 원안동의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>평가기준</th> <th>감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㉠ 등록 인력의 90% 이상 회람</td> <td>감점 없음</td> </tr> <tr> <td>㉡ 70% 이상 90% 미만 회람</td> <td>-2점</td> </tr> <tr> <td>㉢ 50% 이상 70% 미만 회람</td> <td>-3점</td> </tr> <tr> <td>㉣ 50% 미만 회람</td> <td>-5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② 지표별 개선 사항 ⇨ 수정동의 1. A.1.1(운영규정(매뉴얼) 수립의 적정성): 원안동의 ·필수 사항 조정 (변경 전)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① 진단업무 수행 지침에 관한 사항(매뉴얼) - 진단업무 수행 절차 - 진단업무 수행 표준 매뉴얼 ② 기록물(문서) 관리(결재, 등록, 보존)에 관한 사항 - 기록물 관리 절차 및 방법 - 기록물 보존 연한 </div> (변경 후)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○ 진단업무 수행 지침에 관한 사항(매뉴얼) ① 진단업무 수행 절차 및 매뉴얼 ○ 기록물(문서) 관리(결재, 등록, 보존)에 관한 사항 ② 기록물관리 절차 및 방법 ③ 기록물 보존 연한 </div>	평가기준	감점	㉠ 등록 인력의 90% 이상 회람	감점 없음	㉡ 70% 이상 90% 미만 회람	-2점	㉢ 50% 이상 70% 미만 회람	-3점	㉣ 50% 미만 회람	-5점
평가기준	감점												
㉠ 등록 인력의 90% 이상 회람	감점 없음												
㉡ 70% 이상 90% 미만 회람	-2점												
㉢ 50% 이상 70% 미만 회람	-3점												
㉣ 50% 미만 회람	-5점												

구분	검토내용	결과	위원회 검토사항 요약
안전 2	평가 기준 세부 항목 검토	수정 동의	<p>2. A.1.2(연간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): 원안동의</p> <p>·신규 지정 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반영 (변경 전)</p> <p>·신규 지정 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2년도 신규기관은 지정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한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를 기준에 따라 평가 [최소 기본점수(10점) 부여] <p>(변경 후)</p> <p>·신규 지정 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2년도 신규기관은 <u>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, 미 수립한 경우</u> 지정 시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한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를 기준에 따라 평가[최소 기본점수(10점) 부여] <p>3. A.2.1(추가인력 확보 노력): 원안동의</p> <p>·추가인력 판단기준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변경 전)㉠ 법정 인력 기준을 초과하여 등록되어 있을 것 - (변경 후)㉡ 법정 인력 기준을 초과하여 <u>관할 지방고용노동청</u>에 등록되어 있을 것 <p>4. A.2.2(고급인력 확보 노력): 수정동의</p> <p>·고급인력 판단기준 명확화 (원안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변경 전)등록인력 기준 기술사 이상의 자격인 인력에 대해 ~ ※ 기술사 이상의 자격 인력 중 필수인력(1명)은 제외 - (변경 후)등록인력 기준 기술사, 지도사, 의사, 박사 인력에 대해 ~ ※ 기술사, 지도사, 의사의 자격 인력 중 필수인력(1명)은 제외 ※ 박사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한해 인정 ·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, 전기안전, 화공안전, 건설안전 ·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, 산업위생, 산업간호, 인간공학 대기환경 <p>(수정안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변경 전)등록인력 기준 기술사 이상의 자격인 인력에 대해 ~ ※ 기술사 이상의 자격 인력 중 필수인력(1명)은 제외 - (변경 후)등록인력 기준 <u>기술사, 지도사, 의사, 박사</u> 인력에 대해 ~ ※ 기술사, <u>지도사, 의사</u>의 자격 인력 중 필수인력(1명)은 제외 ※ 박사는 <u>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에 한해 인정</u> <p>5. A.2.3(진단인력 근속기간 수준의 적정성): 원안동의</p> <p>·평가 기준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변경 전)현재 기관의 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 - (변경 후)<u>해당 등록인력</u>이 현재 기관의 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 <p>6. A.2.7(진단인력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도): 원안동의</p> <p>·평가 기준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회, 세미나(인정 범위 중 ㉠, ㉡) 참여 등 전문성 향상 활동은 참석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

구분	검토내용	결과	위원회 검토사항 요약
안건 2	평가 기준 세부 항목 검토	수정 동의	<p>7. A.3.1(보유장비 운용·관리 체계의 적정성): <u>원안동의</u> ·평가 기준 명확화(필수사항 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변경 전)보유장비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(작동방법 및 교정 방법 등) - (변경 후)보유장비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(작동방법 및 교정 방법 등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관외 장비운용지침 등 내규에 포함된 것에 한함(장비 제조업체의 매뉴얼은 불인정)</p> <p>8. B.1.2(진단일수 준수 노력도): <u>원안동의</u> ·평가 기준 변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변경 전)명령+자율 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 “0점” 부여 - (변경 후)상기 문구 삭제 <p>9. B.1.3(재해통계분석에 따른 개선대책의 적정성): <u>원안동의</u> ·평가 기준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변경 전)진단(명령+자율) 보고서를 샘플링하여 최근 3년간 ~ - (변경 후)진단(명령+자율) 보고서를 샘플링(5건 이상)하여 최근 3년간 ~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실적이 5건 미만인 기관의 경우 전수 확인)</p> <p>10. B.2.1(업무상 중상해 재해자 감소율): <u>원안동의</u> ·평가 기준 변경, 산식 수정, 평가 기준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변경 전)진단 시작일 기준으로 평가 - (변경 후)진단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평가 ※ 전년도 기 평가를 실시한 기관별 안전보건진단은 평가 제외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- (변경 전)</p> $\frac{\text{평가년도 업무상 중상해 사고재해율} - \text{평가 전년도 업무상 중상해 사고재해율}}{\text{평가 전년도 업무상 중상해 사고재해율}} \times 100$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변경 후)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$\frac{\text{①평가 전년도 업무상 중상해 사고재해율} - \text{②평가년도 업무상 중상해 사고재해율}}{\text{①평가 전년도 업무상 중상해 사고재해율}} \times 100$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변경 전)중상해 재해율, 중상해 재해자 보건진단은 질식, 진폐를 제외한 중상해 재해자를 적용 - (변경 후)중상해 사고재해율, 중상해 사고재해자 보건진단은 산소결핍,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, 화학 물질 접촉에 따른 중상해 사고재해자를 적용 <p>11. B.2.2(사망만인율 감소율): <u>원안동의</u> ·평가 기준 변경, 산식 수정, 평가 기준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변경 전)진단 시작일 기준으로 평가 - (변경 후)진단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평가 ※ 전년도 기 평가를 실시한 기관별 안전보건진단은 평가 제외

구분	검토내용	결과	위원회 검토사항 요약
<p>안전 2</p>	<p>평가 기준 세부 항목 검토</p>	<p>수정 동의</p>	<p>12. B.2.3(진단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): <u>원안동의</u> ·평가 기준 변경 - (변경 전)진단 시작일 이후 평가년도에 발생하여 - (변경 후)진단보고서 제출일 이후 평가년도('22.1.1~12.31)에 발생하여</p> <p>13. B.4.1(안전보건진단 우수사례): <u>원안동의</u> ·평가 기준 명확화 - (변경 전)제출하지 않았을 때 - (변경 후)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</p> <p>14. B.4.3(전문분야 진단 실적): <u>원안동의</u> ·평가 기준 명확화 - (변경 전)RBI, 안전수준평가시스템(ISRS~)의 안전수준 및 문화개선 프로그램 활용 - (변경 후) ·위험기반검사(RBI, Risk Based Inspection)기법을 활용한 진단실적 ·안전수준 및 안전문화 평가 수단(ISRS, 국제안전등급심사)을 통한 진단실적</p> <p>15. B.5.1(k2b 전산 관리의 적정성): <u>원안동의</u> ·평가 기준 명확화 - (변경 전)자체평가 항목 1개 이상 평가방법, 평가결과를 미작성한 경우 불인정함 - (변경 후)자체평가 항목 1개 이상 평가방법, 평가결과를 미작성한 경우 자체평가의 적정성은 0점 부여</p>